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시민옴부즈맨을 구성, 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옴부즈맨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시민옴부즈맨의 구성, 결격사유 등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 제9조)

다. 시민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제2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시민옴부즈맨을 설치하여 시민의 시정에 관한 고충 처리와 시정요구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미시 시민옴부즈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구미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옴부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구미시 시민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이란 구미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읍부즈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들의 권익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2.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의뢰
3. 반복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공동조사
4. 시민고충사항에 대한 관찰 및 제보
5.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건의
6. 시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읍부즈맨에게 위탁된 사항

제4조(구성) ① 읍부즈맨은 대표읍부즈맨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읍부즈맨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읍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6. 각종 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피해자 상담기관 등 아동의 권리보
호를 위한 기관·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옴부즈맨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5조(대표옴부즈맨) ① 대표옴부즈맨은 옴부즈맨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
맨을 대표한다.

② 대표옴부즈맨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
부즈맨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맨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옴부즈맨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맨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맨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
직된다.

제7조(겸직금지) 옴부즈맨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

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 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옴부즈맨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맨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맨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맨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옴부즈맨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ombudsman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표ombudsman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 예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ombudsman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ombudsman 회의는 재직 ombudsman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ombudsman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할) ombudsman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및 그 소속기관 등
2. 구미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구미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제12조(운영기관) ombudsman 운영의 주관부서는 감사담당관실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ombudsman이 감사 의뢰한 사항에 대한 부의 및 결과 통보
2. ombudsman이 제안·제보한 사항의 접수·처리 및 결과 통보
3. 조사·처리결과 비위 관련 공무원 조치
4. ombudsman의 운영사항 보고 등

제13조(비밀유지 의무) ombudsman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 ombudsman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접수)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맨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민원의 각하) ① 옴부즈맨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옴부즈맨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옴부즈맨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고충민원 공동조사) ① 옴부즈맨과 관계 공무원이 공동 조사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비위와 특별한 관련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기된 민원
2. 동일사항으로 오랜 기간 해소되지 아니하고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
3. 그 밖의 민원사항 중 공동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민원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공동조사는 옴부즈맨과 관계 공무원 4명 이내로 실시하며 조사대상, 범위 및 방법 등은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옴부즈맨과 관계 공무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③ 조사방법은 서류열람, 검토, 현지방문, 관찰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와 필요시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방문 면담을 통하여 조사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옴부즈맨은 조사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맨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구미시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제보·제안·건의) ① 옴부즈맨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제안 또는 건의(이하 “제보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이 제1항에 따른 제보 등을 하는 때에는 문서, 전자우편,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 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 등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 내용
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22조(처리) 감사담당관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감사의뢰와 제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맨 감사의뢰 및 제보사항 등 접수부(별지 제3호 서식)
2. 옴부즈맨 감사의뢰 및 제보사항 등 처리부(별지 제4호 서식)

제23조(처리절차 등) ① 옴부즈맨의 감사의뢰와 제보 등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이 직접조사·처리하거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 기관(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상황 보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맨이 의뢰한 감사 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
2. 옴부즈맨의 제보 등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
3. 그 밖에 옴부즈맨 활동상황 및 조사처리 사항

제25조(관련 정보의 보호) 옴부즈맨의 감사의뢰와 제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개인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담, 수범 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
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

제26조(수당) 옴부즈맨이 고충민원 등의 공동조사에 참여하거나, 옴부즈맨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신청내용 및 취 지			
신청사유	1. 일 시 : 2. 장 소 : 3. 행 위 자 : 4. 행위내용 : 5. 피해 또는 파급효과 등 :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신청인이 구술한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		
※ 비고 : 신청취지 및 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옴부즈맨 감사의뢰 및 제보사항 등 접수부

접수 번호	접수일시	제출자			처리기한	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옴부즈맨 감사의뢰 및 제보사항 등 처리부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관련) 부 서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처리일시		처리방법	서면, 전화, 면담, 기타		
처리결과회신내용(요지)					
처리구분	완결() 처리중() 불가()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옴부즈맨 운영에 따라 제도개선, 비리 사항 제도 등 실적이 있거나 고충민원 공동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맨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2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수당과 여비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회의나 고충민원 공동조사를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움(안 제26조)

4. 작성자

감사담당관실 청렴조사계장 김영철 (☎480-6071)

감사담당관실 행정7급 이경호 (☎480-6072)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 8. 생략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관 실·과		감사담당관실
입 안 자	과 장	이 성 철
	담 당	김 영 철
	담 당 자	이 경 호 (480-6072)